

가계안정자금 대부제도! 올해 알아야 할 내용은?

“가계안정자금을 신청하려고 합니다. 올해 대부제도가 많이 바뀐다고 들었는데, 어떤 내용이 변경되었나요?”

✔ 2020년 가계안정자금은 신청사유 항목을 단순화 하고, 일부 대부 선정기준 점수를 변경하였습니다.

➤ 가계안정자금 신청사유 **재난발생, 타지역 인사발령, 부채상환 사유 삭제**

① 결혼(본인, 자녀): 본인 40점, 직계비속 12점

- 직원 본인결혼 사유인 경우 주택자금, 긴급생활자금과 동시 신청 가능

② 사망(배우자, 직계존비속) : 배우자/직계비속 15점, 직계존속 12점

③ 의료비(본인, 배우자, 직계존비속) : 직원 15점, 배우자/직계비속 12점, 직계존속 10점

- 의료비 지원한도 초과 발생한 금액(노부모 요양비 포함)

④ 직계비속 입학(타지역 100km 이상) : 10점

※ 가계안정자금 대부는 신청사유별 최대 1년 이내 사유발생하고, 관련 지출증빙이 가능한 경우 신청 가능하며, 부부사원은 1인만 신청 가능합니다. (최대 3천만원까지 대부 가능)

❓ 무엇이든 물어보세요

❏ **입사 전 본인학자금 대출금 상환을 위한 대부가 신설되었는데, 2020년 이전 입사한 직원도 수혜가 가능한가요?**

✔ 네, 가능합니다.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금 잔액이 있는 2020.1.1일 이전 입사한 직원도 포함하여 1회에 한해 대부가 가능합니다.

▪ 운영기준

- 대부금액 : 대부한도 없음(본인명의 학부과정 학자금대출금 잔액)

- 상환기간 : 5, 7, 10년 중 택일, 원금균등 분할상환

- 이자율 : 무이자(연체이자율 20%)

❏ **올해 1.6일에 자기계발비를 신청해 승인받았는데, 언제 지급받을 수 있나요?**

✔ 매달 15일 이전 승인 시 당월 25일에 별도 계좌로 지급됩니다.

※ 자기계발비는 당월 15일 이전 승인 시 당월 25일에 지급되며, 16일 이후 승인 시 익월 10일 지급됩니다.(12.16일 이후 추가 승인분은 12월 말일에 지급)